

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(정부 제출)

검 토 보 고

I. 주요내용

- 납세의무자 등의 요구에 따라 국세 과세표준 결정서 등본 또는 초본이 원본과 일치함을 확인하거나 장부 등의 반환 시 보관할 사본이 원본과 일치함을 확인할 때에 종이문서 확인 없이 전자화 문서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함(안 제16조제4항 및 제81조의10제6항).

II. 검토의견

개정안에 대한 체계·자구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,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았음.

(수석전문위원 심 정 희)